

2024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 액셀러레이터 공모요강

※ 본 공고는 「2024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운영을 수행하는 액셀러레이터(보육사)를 공모하는 공고문입니다. 「2024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기업 선정 공모는 '24년 2월 중(설 연휴 이후) 별도 진행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발굴,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사업의 액셀러레이터(보육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공모명) 2024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 액셀러레이터 공모
- (공모목적) 예술기업의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확장,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창업 전문 보육사 선정
- (지원대상) 창업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
- (협약기간) 2024년 2월 ~ 12월 (약 11개월)
 - ※ 위탁기간 종료 후 사업평가에 따라 다년 지원 가능
- (지원규모) 총 4개 기관 ※중복신청 가능

구분		주요내용	선정규모
초기창업		• 예비창업 및 초기(3년) 창업기업 사업기반 육성 - 예술분야 초기기업의 사업모델 기반구축 및 교육컨설팅, 민간재원 유치 등	2개
창업도약	유형①	• 성장기 예술기업의 사업모델 고도화 및 판로개척 - 3년 이상 7년 이내 예술기업의 사업모델 고도화, 시장 확대, 투자유치, 외부기관 및 외부자원 연계 등	1개
	유형②	• 성장기 예술기업의 후속투자 유치 & 글로벌 진출 - 3년 이상 7년 이내 예술기업의 후속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등	1개

- (지원예산) 금1,800,000,000원(금일십팔억원)

구분		보육기업 수	지원예산
초기창업		• 총 보육기업수 65개 (보육사별 30-35개 내외 육성) ※ 보육기업 수로 산출하여 지원규모 최종 산출(보육사별 보육기업수에 따라 차등지급)	840백만원 (2개사)
창업도약	유형①	• 보육기업 수 25개 내외	500백만원
	유형②	• 보육기업 수 20개 내외	460백만원

※ 지원금 내 참여기업(예술기업) 사업화 지원금은 불포함(센터 별도 지급예정)

□ 신청 대상 및 요건

○ (신청자격) 창업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

구분	신청자격	
필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 완료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우대 사항	초기창업	① TIPS 운영 경력사(본 공모 공고일 기준 3년)
	창업 도약	[유형1] ① TIPS 운영 경력사(본 공모 공고일 기준 3년)
		[유형2] ① TIPS 운영 경력사(본 공모 공고일 기준 3년) ②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경력사(본 공모 공고일 기준 3년)

※ 우대사항 해당 시 서류심사 가산점 각 2점 부여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본 공모는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은 1개로 선정

※ 본 공모는 컨소시엄 불가

○ (신청요건)

① 사업기간 내 참여기업 대상 직접투자 필수(초기창업 60백만원 이상, 창업도약 200백만원 이상)

- 최소 2개 기업 이상 차등 투자 가능
- 협약기간 내 투자 미이행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불인정(환수조치)
- 투자한 참여기업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도 하차하는 경우, 해당 금액 불인정(동일 금액 타 기업 투자 시 인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 10조」에 의거 본 사항은 교부 조건으로 미이행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② 최소 상근·전담인력(초기창업 최소 6명, 창업도약 최소 5명) 필수

- 총괄책임자 30%, 기획, 운영 책임자 100%, 기획·운영 담당자 최소 1인 70% 이상 구성 필수

구분	참여율	기준	인원		
			초기 창업	창업 도약	
필수	총괄 책임자 (PM)	30%	· (담당업무) 사업 총괄 및 운영 책임 · (자격기준) 해당 사업 총괄 및 책임 3년 이상(임원(급))	1명	1명
	기획/운영 책임자(PL)	100%	· (담당업무) 프로그램 운영 총괄 및 책임 · (자격기준) 벤처창업지원, 투자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	1명	1명
	기획/운영 담당자	최소 1명, 70% 이상	· (담당업무) 프로그램 운영 실무 · (자격기준) 벤처창업지원, 투자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4명	3명
선택	겸직 인력	-	· (담당업무)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 인력별 참여율 및 상세기준은 별첨 참고

○ (신청제한) 신청기관(또는 대표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신청을 제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장 제13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징수유예 포함)

예외 조건	공모 신청·접수마감일(24.1.25.기준)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예외 조건	공모 신청·접수마감일(24.1.25.기준)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2.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4.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웃, 개인워크 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또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고마감일 기준 문체부 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직자 및 퇴직자(2년 이내)가 근무(상근직)하는 경우
* 퇴직자 영입확인서 작성 및 제출 필수(별첨)

□ 지원예산

○ (사업비 편성)

목	세목	세부내용	비율
인건비 (110)	보수 (01)	-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30%
	상용임금 (03)	-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여비 (220)	국내여비 (01)	-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30%
	국외여비 (02)	-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70%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구입 및 전문가 활용비, 행사운영 관련 경비	
	임차료 (07)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각종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일반용역비 (14)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계			100%

※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30%이내 편성 가능

※ 사업비는 지원신청서의 사업비 편성기준을 참고하며 편성, 최종 예산은 센터와 협의 후 결정

○ (사업비 교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교부

○ (집행 및 정산)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거 예산 집행 및 정산 진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회계검사) 사업비 전액에 대해 센터 지정한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진행

※ 사업추진 계획 및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는 분할지급 예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024년 1월 25일(목) 까지

- (e나라도움시스템 접수기간) 2024년 1월 19일(금) ~ 1월 25일(목) 15:00까지

※ 공모 참여사가 없거나 선정규모 미달 시 재공모 진행

※ e나라도움 시스템(온라인접수)은 1.19.(금)부터 접수가 가능

○ (신청방법) 온(e나라도움)·오프라인(우편발송) 병행 신청·제출 필수

- (온라인) 접수마감일(1월 25일(목)) 15:00까지 온라인 제출

· 회원가입 후(www.gosims.go.kr) 기관 및 사업담당자 권한 설정 후 사업신청

· 사업수행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예술경영지원센터 검색 후 제출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문의 (1670-9595)

- (오프라인) 접수마감일(1월 25일(목)) 18:00까지 e나라도움 접수·제출 동일서류 인쇄본 6부 우편제출(오프라인 자료는 기한 내 도착분만 인정)
제출처 (03142)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트윈트리타워 A동) 7층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업육성팀

- ※ 제출자료 봉투 또는 박스 전면에 “2024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 엑셀러레이터 공모-(초기창업 / 창업도약① / 창업도약②)” 문구 작성 필수
- ※ 오프라인 신청·제출 건은 '24.1.25.(목) 18시 이후 도착 건 접수 불가 및 반송처리
- ※ 제시된 제출 방식 외 e메일, 방문 제출 등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처 및 방법
필수	① e나라도움 공모신청서	e나라도움 시스템 작성
	② 지원신청 공문(자체양식 활용) 1부	
	③ 지원신청서 양식(HWP) 1부 * 지원신청서 양식 내 함께 제공된 서식 제출 필수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⑥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납부)증명서 각 1부	
	⑦ 2022~2023년 재무재표 각 1부	
	⑧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1부	
	⑩ 퇴직자 영입확인서 1부	
	⑪ 전담인력 상세이력 1식	
	⑫ 최근 3년간 유관사업 참여 확인서(공모·입찰·계약 등) 1식	
	⑬-① (초기창업해당) 최근 3년(21.1.11~) 이내 공공기관 대상 예비 및 초기창업기업 보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증빙서류	
⑬-② (창업도약①,②해당) 최근 3년(21.1.11~) 이내, 건당 1억원 이상 투자실적 증빙서류		
선택	① 중소벤처기업부 엑셀러레이터 등록증, 기타 지정·인증서, 상장 등 심의 참고 자료 등	
	② 기업(사업) 포트폴리오 또는 소개서(표지 포함 30p이하 PDF)	
	③ 증빙자료 (해당시 제출) - TIPS 운영 실적 증명서류(공통) -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실적 증명서류 (창업도약②에 한함)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공모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 ※ 제출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요건검토 시 부적격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주의사항)

- 접수기한(24.1.25.(목)) 내 e나라도움(15:00까지) 및 우편(18:00까지)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
 - ※ 온·오프라인 모두 제출 필수
 - ※ 온라인(e나라도움) 신청·접수 건은 접수마감 이후 입력 및 제출 불가(시스템 자동접수마감)
 - ※ 오프라인(우편) 신청·접수 건은 접수마감 기한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도착 건 반송 처리(접수 불가)
- 접수 마감 당일 시스템 과부하 및 배송 지연 등으로 접수가 안될 수 있으니 사전 제출 필수
- 온·오프라인 제출서류는 동일해야 하며, 상이할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양식 외 사용 불가하며 제출서류 허위작성(확인 및 검증불가) 및 증빙자료 누락, 허위, 위변조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2024년 1월 5주 ~ 2월 1주 예정
 - (서류심사) 2024년 1월 30일(화) ~ 1월 31일(수) (예정)
 - (발표심사) 2024년 2월 5일(월) ~ 2월 6일(화) (예정)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방법)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 및 인터뷰평가 → 전담 보육사 선정
 -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기반 수행사의 사업능력,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차별성, 성과 및 관리방안, 예술산업 기여도, 유관사업 이력 및 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70점 미만 신청기업은 서류심사 탈락 및 발표심사 참여 불가
 - ※ 공모별 접수건수가 3배수 미만 시 서류심사 생략
 - (발표심사) 신청사의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 역량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 ※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심사위원)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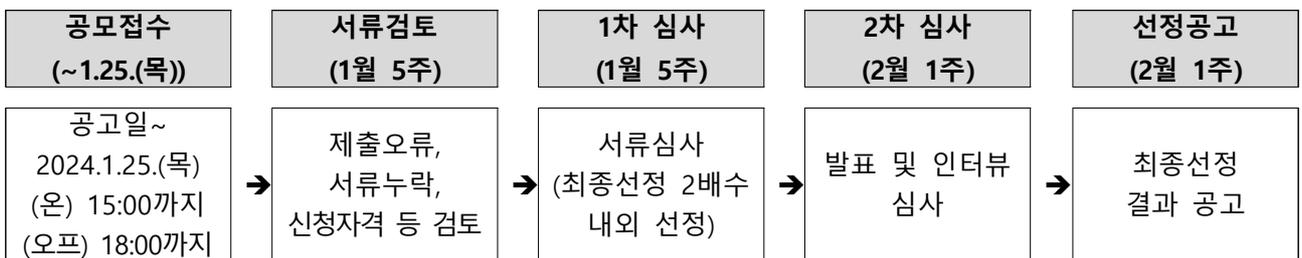
- (심사기준 및 항목) 접수 건수에 따라 심사방식 상이
 - ① 3배수 미만 접수 시 : 발표심사(재무건전성 및 사업실적 계량산출 적용)
 - 재무건전성 및 사업실적(계량 10점), 사업수행능력, 예술기업 특화 프로그램 전문성 및 차별성, 성과 및 관리방안, 예술산업 기여도 등(비계량 90점)
 - ② 3배수 이상 접수 시 :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 : 재무건전성 및 사업실적(계량40점), 수행사 사업능력 등(비계량60점)
 - (2차) 발표심사 : 재무건전성 및 사업실적(계량 10점), 사업수행능력, 예술기업 특화 프로그램 전문성 및 차별성, 성과 및 관리방안, 예술산업 기여도 등(비계량 90점)
- (심사선정)
 -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발표심사 대상 선정
 - 서류 및 발표심사 모두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을 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사의 중도 협약포기 등 발생 시, 발표심사점수 고득점 순서대로 선정
- (선정취소) 최종 발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경우에도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함

※ 사업선정 취소 사항

1. 본 사업의 참여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사업수행계획서를 허위 또는 도용하여 제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체결기간 내 협약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협약 체결 전 사업수행을 자진 포기하는 경우
6. 경영악화, 사업전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사업관리기관(문체부 및 예경)이 협약 체결이 불가능하다 판단하는 경우

□ 추진 일정(안)

○ (공모 및 심사 일정(안))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 e나라도움 및 우편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신청이 가능함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e나라도움 및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2024년 1월 25일(목) 15:00 및 18:00까지) 이후에는 일절 변경 불가함
- 선정사는 예경과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전 무단으로 “예술기업 지원 사업 프로그램 보육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상기 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취소(사업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가이드」 등의 사항을 준수 적용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0조)
- 지원 사업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사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 할 수 있음
-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보육사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보육사 대표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사는 공모신청과 착수보고 시 계획·보고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이행·완수해야함

□ 문의처

○ (문 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기업육성팀

사업구분	연락처	
초기창업	02-708-2263, 2268, 2235	startup@gokams.or.kr
창업도약	02-708-2295, 2223	

※ 사업신청 관련 문의는 평일(월~금) 10:00~17:00 중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별첨1] 초기창업 보육사 세부 수행내용

[별첨2] 창업도약-유형① 보육사 세부 수행내용

[별첨3] 창업도약-유형② 보육사 세부 수행내용